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11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나11776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가단882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전영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휴정, 박계성

변론종결 2021. 10. 20.

판결선고 2021. 11. 17.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19가단8827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제4면 제8행의 “2008. 8. 1.”을 “2018. 8.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창민, 판사 조지환, 판사 나상훈